

조선총독부관보(朝鮮總督府官報) 제1233호(號) 1916(大正 5)년 9월 11일

○ 고 시(告示)

조선총독부고시(朝鮮總督府告示) 제212호(號)

1916(大正 5)년 10월 1일부터 조선총독부 철도국(朝鮮總督府鐵道局)에서 하기[左記] 규칙(規則)에 의거하여 운송화물(運送貨物) 대금상환(代金相換)의 취급(取扱)을 개시(開始)한다.

1916(大正 5)년 9월 11일 조선총독(朝鮮總督) 백작(伯爵)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

철도운송화물대금상환규정鐵道運送荷物代金相換規程

·제1조 아래[左]에 게시(揭示)한 하물(荷物)의 하송인(荷送人)은 그 탁송하물(託送荷物)과 대금(代金)과의 상환(相換)을 철도국(鐵道局)에 위탁(委託)할 수 있다. 단, 하물상환증(荷物相換證)을 발행(發行)한 것 및 잠란지(蠶卵紙), 동물(動物), 생선어(生鮮魚), 선육(鮮肉) 기타 부패(腐敗)하기 쉬운 것은 이 범주[限]에 있지 않다.

1. 수하물[小荷物]

(가) 통상 수하물

(나) 파손(破損)되기 쉬운 물품(物品), 부피가 큰 물품

(다) 차량류(車輛類)

(라) 귀중품(貴重品) 제1종(種) 및 제2종

2. 대화물(大貨物)

(가) 보통화물(普通貨物)

(나) 특종화물(特種貨物) 중(中) 차량류

·제2조 ①대금상환하물(代金相換荷物)이 도착(到着)하였을 때는, 도착역[著驛]은 이것을 수하인(受荷人)에 통지(通知)하고, 도착역에서 대금과 상환하여 하물(荷物)의 상환을 한다. 단, 배달부(配達附) 수하물, 배달부(配達附) 대화물(大貨物) 및 속달편취급(速達便取扱) 대화물은 대금수령(代金受領) 후(後) 배달한다.

②도착역[著驛]에서 하물 도착의 통지를 발송(發送)한 날[日]부터 3일 내(內)에 수하인이 대금상환(代金相換) 수속(手續)을 하지 않을 때는 그 이후의 경과시간(經過時間)에 대하여 성문화된 규정[成規]의 보관료(保管料)를 수수(收受)한다.

·제3조 ①전조(前條) 제1항(項) 단서(但書)의 하물의 하송인(荷送人)은 수하인(受荷人)의 거택(居宅)에서 하물과 대금과의 상환을 행해야 하는 것을 위탁(委託)할 수 있다.

②하물의 도착지(到着地)에 도착한 후(後)는 수하인에게 전항(前項)의 위탁을 할 수 있다.

·제4조 ①하송인(荷送人)이 대금상환취급(代金相換取扱)의 위탁(委託)을 하고자 할 때는 하물 및 관계서류(關係書類)의 발송 전(前) 출발역[發驛]에서 이것을 청구(請求)해야 한다.

②전항(前項)의 경우에서 화물 수탁(受託) 후(後)일 때는 수하물표(手荷物票) 또는 화물 운송통지서(貨物運送通知書)를 제출할 것을 요(要)한다.

·제5조 상환대금액(相換代金額)은 1인당[口當] 1000엔(圓) 이하로 하고, 전(錢) 단위 미만의 우수리[端數]가 없는 것에 한정한다.

·제6조 대금상환하물수탁역소(代金相換荷物受託驛所)는 철도국장관(鐵道局長官)이 이것을 정(定)한다.

·제7조 대금상환하물을 계약(契約)하였을 때는, 출발역[發驛]은 대금상환증(代金相換證)을 하송인(荷送人)에 교부(交付)한다.

- 제8조 ①제3조의 경우에는, 수하인(受荷人)은 배달을 받아야 할 장소(場所) 및 일(日)을 도착역[著驛]에 신청할 수 있다. 단, 배달일(配達日)은 도착¹⁾의 통지(通知)를 발송(發送)한 날[日]부터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 ②도착역[著驛]에서 하물(荷物)의 배달을 해도 대금과 상환을 할 수 없을 때는 그 배달을 한 날[日]의 익일(翌日) 또는 수하인(受荷人)이 지정(指定)한 날[日]에서 상환의 수속을 한다. 단, 하물 도착의 통지를 발송한 날[日]부터 10일을 초과하였을 때는 도착역[著驛]에서 대금을 수령(受領)한 후(後) 배달을 한다.
- 제9조 ①도착역[著驛]에서 상환대금을 수령하였을 때는 대금상환결제통지서(代金相換決濟通知書)를 하송인(荷送人)에 송부(送付)하고 동시에 그 취지(趣旨)를 출발역[發驛]에 통지한다.
 - ②출발역[發驛]에서 전항(前項)의 통지를 받았을 때는 하송인(荷送人)에 대하여 이것이 지불(支拂)해야 한다는 취지(趣旨) 통지해야 한다.
- 제10조 하송인(荷送人)은 전조(前條)의 통지를 받았을 때는 대금상환증(代金相換證) 및 대금상환결제통지서(代金相換決濟通知書)를 출발역[發驛]에 제출하여 이것과 상환으로 대금을 수취(受取)한다.
- 제11조 ①대금상환증(代金相換證)을 망실(亡失)했을 때는 하송인(荷送人)에게서 그 정당한 권리자(權利者)인 것을 증명(證明)한 경우에 한(限)하여 철도는 상환대금을 지불한다.
 - ②대금상환결제통지서를 망실하였을 때는, 하송인은 그 재교부(再交付)를 도착역[著驛]에 청구할 수 있다. 단, 이것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 제12조 ①하송인(荷送人)은 도착역[著驛]에서 하물 도착의 통지를 발송할 때까지 또는 수하인(受荷人)에게서 대금액(代金額)에 이의(異議)가 있는 경우에 한(限)하여 상환대금액의 변경 또는 대금상환취급(代金相換取扱)의 취소(取消)를 청구(請求)할 수 있다. 단, 상환대금액 증가의 청구는 하물 및 관계서류의 출발역[發驛] 발송 전(前)에 할 것을 요(要)한다.
 - ②전항(前項)의 경우에는 수하물표(手荷物票) 또는 화물운송통지서(貨物運送通知書)에 대금상환통지서를 첨부(添附)하여 하물수탁역(荷物受託驛)에 청구한다.
- 제13조 하송인(荷送人)이 대금상환하물의 운송중지, 반환 또는 도착역[著驛]이나 수하인(受荷人)의 변경을 하고자 할 때는 수하물표(手荷物票) 또는 화물운송통지서(貨物運送通知書)에 대금상환증(代金相換證)을 첨부(添附)하여 이것을 출발역[發驛]에 청구한다.
- 제14조 대금상환에 관한 수수료(手數料)는 아래[左]와 같다. 단, 특별히 비용을 요(要)할 때는 하송인에게 이것을 부담토록 한다.

1. 대금상환수수료代金相換手數料

대금 20엔(圓)까지	8전(錢)
대금 30엔까지	10전
대금 50엔까지	15전
대금 100엔까지	20전
대금 100엔 이상 100엔까지마다	5전

2. 거택상환(居宅相換)의 위탁(委託)이 있는 경우에 대한 대금상환수수료

1) 역자: 원문에는 到者로 오기되어 있다.

대금 20엔(圓)까지	10전(錢)
대금 30엔까지	13전
대금 50엔까지	20전
대금 100엔까지	27전
대금 100엔 이상 100엔까지마다	10전

3. 상환대금액(相換代金額)의 변경 또는 대금상환취급 취소수수료

하물 및 관계서류 발송 전에 행해질 때	1회당(當)	5전(錢)
하물 및 관계서류 발송 후에 행해질 때	1회당	10전

- 상환대금 증액의 경우에는 전항(前項)에 의거하여 대금총액(代金總額)에 대한 수수료를 계산하고, 그 차액(差額)을 수수(收受)한다.
- 제3조 제2항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 수수료와 제2호 수수료와의 차액을 하수인에게서 수수한다.
- 제8조의 경우에 특별히 비용이 발생하였을 때는 수하인(受荷人)에게서 이것을 수수한다.
- 제15조 ①전조(前條)의 수수료는 신청을 받았을 때 이것을 수수한다. 단, 운임 그 기타 요금이 착불취급(著拂取扱)일 때는 이것에 의거할 수 있다.
 - ①제3조의 경우에서 수하인(受荷人)에게서 수수해야 할 운임 기타 요금은 대금과 함께 수하인의 거택(居宅)에 가서 이것을 수수한다.